

의정부지방법원 2024. 4. 25 선고 2023가단229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]

전 문

원 고 A중회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변 론 종 결 2024. 3. 28.

판 결 선 고 2024. 4. 25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

가.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도면 표시 20, 21, 22, 23, 24, 25,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□ 부분 3㎡ 지상 화장실, 같은 도면 표시 26, 27, 28, 37, 38, 39,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▤ 부분 6㎡ 지상 창고, 같은 도면 표시 19, 20, 25, 26, 39, 40, 41, 42, 32, 33, 34, 35, 36,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120㎡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하고,
나.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감정도 도면 표시 17, 18, 38, 19 내지 29,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8㎡, 같은 도면 표시 30 내지 36, 19, 18, 17,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41㎡를 각 인도하고,

다. 각 2,2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, D은 2023. 5. 19.부터, 피고 C은 2023.

5. 20.부터, 피고 E은 2023. 7. 19.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, 라. 2023. 1. 1.부터 위 각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각 연 250,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변경된 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B, C, D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 판결)나. 피고 E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강진우

별지